



제18738호 2016. 4. 12.(화)

【법 률】

○법률제14096호(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중정정 4

【대 통 령 령】

- 대통령령제27092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4
- 대통령령제27093호(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5
- 대통령령제27094호(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7
- 대통령령제27095호(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8

【부 령 령】

- 환경부령제646호(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0
- 국토교통부령제302호(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
- 기획재정부령제559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24

【고 시】

-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151호(금융결제원 전자서명 공인인증기관 갱신지정)..... 27
- 법무부고시제2016-138호(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27
-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62호(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위례 A2-4BL>) 27
-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78호(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하남미사 A25BL>) 28
-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79호(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하남미사 A25BL>) 28
- 문화재청고시제2016-19호(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기준 일부개정) 29
- 기상청고시제2016-3호(상층기의 검정기준에 대한 검사방법 및 공차 일부개정) 30
-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6호(국적취득) 30
-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7호(국적상실) 31
-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5호(국적상실)..... 31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36호(도로구역결정 및 지형도면결정<변경>) 31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37호(도로구역결정 및 지형도면결정<변경>) 32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33호(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33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27호(석문국가산업단지 공원시설 설치사업<실시계획 변경> 승인) 37

(이면 계속)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70호(항로표지 현상변경)	46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31호(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46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37호(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	47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4호(항로표지 신설)	47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75호(하천수사용 허가)	48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76호(하천수사용 허가)	48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34호(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49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35호(하천수사용 허가)	49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93호(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49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132호(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	50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131호(유전자변형식품 승인).....	51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6-27호(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2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6-28호(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3
○금융위원회공고제2016-98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54
○기획재정부공고제2016-56호(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5
○국방부공고제2016-72호(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6
○국방부공고제2016-73호(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7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109호(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58
○보건복지부공고제2016-231호(비영리민간단체 등록).....	59
○보건복지부공고제2016-236호(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9
○보건복지부공고제2016-237호(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1
○환경부공고제2016-320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2
○환경부공고제2016-321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3
○환경부공고제2016-322호(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4
○환경부공고제2016-323호(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5
○환경부공고제2016-324호(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6
○환경부공고제2016-325호(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7
○환경부공고제2016-326호(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8
○환경부공고제2016-327호(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9
○환경부공고제2016-328호(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0
○환경부공고제2016-329호(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0
○환경부공고제2016-330호(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2
○환경부공고제2016-331호(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3

○고용노동부공고제2016-133호(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73
○국토교통부공고제2016-481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74
○국토교통부공고제2016-487호(신기술지정 신청).....	76
○국토교통부공고제2016-488호(신기술지정 신청).....	76
○국토교통부공고제2016-489호(보호기간연장 신청).....	77
○해양수산부공고제2016-317호(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 해설 일부개정)	78
○해양수산부공고제2016-318호(항만 및 어항공사 전문시방서 일부개정)	79
○중소기업청공고제2016-132호(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6-31호(2-1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3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 설계공모)	82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6-39호(공시송달).....	85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46호(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86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6-21호(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정정<변경>).....	87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10호(공시송달).....	87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11호(공시송달).....	92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고시제2016-130호(학교시설사업 완료).....	93
○경기도공고제2016-437호(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93
○경기도공고제2016-439호(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93
○강원도고시제2016-107호(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관광기반시설지구> 변경 지형도면)중정정	94

【기 타】

○압수물환부공고(대전지방검찰청홍성지청)	94
○압수물환부공고(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	94
○압수물환부공고(제주지방검찰청)	94
○결정(서울고등법원 · 광주지방법원 · 춘천지방법원)	95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신세계건설(주), ② 한국건설기술연구원, ③ 아이엔티엔지니어링(주)

나. 전화번호 : ① 02-3406-6621, ② 031-910-0768, ③ 02-546-1556

2. 명칭 : 잘린 역원뿔형 편칭전단보강재를 이용한 기초보강공법 (MSP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강판을 콘 롤링하여 잘린 역원뿔 형태로 제작한 편칭전단 보강재를 직경이 큰 부분이 위로 향하도록 기초 상부철근 하부의 기둥 주철근 둘레에 설치하여 기초판 상부 영역을 3축 압축 상태가 유지되도록 보강하고 위험전단균열이 발생하기 직전에 발생하는 인장 변형도를 억제하는 기초보강공법으로, 기둥으로부터 전달되는 압축력과 주변 전단력의 조합에 따라 발생하는 경사균열을 원추형 편칭전단 보강재를 통해 하중전달경로를 변경함으로써 위험 단면 둘레가 확대되어 기초의 내력을 증대시키며 파괴 형태를 사인장-휨 파괴 또는 휨 파괴로 유도하여 기초의 연성 능력을 증대시킴으로써, 기초의 두께 축소가 가능하며 이에 따른 터파기량도 절감할 수 있는 경제적이며, 기둥 철근 배근시 편칭전단 보강재를 단순거치함으로써 설치하면 공정이 난해한 전단보강근 설치과정을 생략할 수 있어 시공성이 향상되는 공법이다.

<범위>

강판으로 제작된 잘린 원뿔 형태의 편칭전단보강재를 직경이 큰 부분이 위로 향하도록 기초 철근 배근시 기둥 주철근 둘레에 설치하여 전단내력을 증대시키는 기초보강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6-489호

보호기간연장 신청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28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주)반석티브이에스, ② 에스에이치공사, ③ (주)건축사사무소 건원엔지니어링,
④ 롯데건설(주), ⑤ (주)포스코건설

나. 전화번호 : ① 070-4827-4210, ② 02-3410-8511, ③ 02-3496-8173, ④ 02-3483-7880, ⑤ 032-748-1906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628호

3. 명칭 : 패널형 경량체 유닛을 활용한 이방향 중공슬래브 공법

4.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기술은 철근 콘크리트 바닥슬래브의 단면에서 구조적 기능을 하지 않는 콘크리트 슬래브의 중앙부에 캡슐형 또는 땅콩형 경량체를 삽입함으로써 자중을 줄여 기존의 바닥 슬래브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리는 공법으로 경량체의 상·하부에 격자형 망을 설치하여 이방향 중공슬래브 유닛을 형성한다. 이를 기존의 철근콘크리트 슬래브 구조의 상하 철근사이에 유닛을 설치하는 거푸집 공법으로 시공하거나, 일방향으로 제작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슬래브 또는 데크플레이트에 직각방향의 철근을 현장에서 배근하여 패널간의 이음방법이 개선된 이방향 슬래브를 형성하는 공법으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조 건물에 모두 사용가능한 공법이다.

<범위>

캡슐형 또는 땅콩형 경량체를 격자형 망으로 조립하여 패널형으로 제작한 EPS재질의 경량체 유닛을 적용한 이방향 중공슬래브 공법

5. 보호기간 : 2011.09.05 ~ 2016.09.04. (5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해양수산부공고제2016-317호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해설」(해양수산부공고 제2014-397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해설 일부개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해설」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기준명 :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해설